



◆ 중견기업을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

매출액 5 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협약체결대상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위 예규, 협약기준)」을 개정, 매출액 5,000 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체결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9월 이후 주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중견 협력사, 매출액하도급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최근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사와 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거래 단계별 수직적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매출액 5,000 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 규정(협약기준 제 3 조)에 중견기업을 명시했지만, 대기업의 협약 체결 상대방으로서의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5,000 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평가부담을 해소했다.

평가항목 중에서 중견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협약의 핵심 요소로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은 유지하고, 협력사 지원항목 중에서 중소기업사의 영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개선(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반면 중견기업의 협약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비했는데,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자금 지원, 기술 지원, 교육훈련인력 지원,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 등을 삭제하고, 2 차 협력사 지원 부분도 평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완했는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도 부당지원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피터팬신드롬’을 차단하는데 일조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여 원활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끝)

※피터팬신드롬: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 성년이 되어도 가족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